

투자설명서 변경 수시 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대상투자신탁 : **Tops 아시아 자산배분 재간접투자신탁 1호**
2. 변경 내용 : 운용전문인력 변경 (신동국 → 신종기)
3. 변경 적용일 : 2007. 02. 20.